

주요 개정내용

본 지침은 방역당국 지침 및 유·초·중등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대학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지역 확산 정도에 따라 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방역당국의 지침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,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본 지침은 방역당국의 각종 지침을 대학 현장에 맞게 해설한 것으로, 방역당국의 지침이 개정되는 등의 사유로 방역당국 최신 지침과 동 안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최신 지침을 우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지침은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 본 지침은 2023.6.1.부터 적용되며,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
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

[제9판]

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적용·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5. 31.

교 육 부

주요내용	제8판	제9판
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	격리 기간(7일 의무)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인 간 주의 권고	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(심각→경계)에 따라 5일 격리 권고
학내 방역관리체계	대학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	삭제 (자율적 운영 권고)
학교행사	숙박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	삭제 (자율적 운영 권고)
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	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(23.1.30.~) ▶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	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사항 (23.6.1.~) ▶ 감염취약 시설 중 입소형 시설,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	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	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상황 ▶ 확진자 추가 ▶ 대중교통(통학버스 등), 의원급 의료기관, 약국 등 착용권고

☐ 정서 부분을 제외한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판과 동일하게 적용 : 소독·환기, 식당 및 기숙사 관리,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·운영,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등

목 차

I. 대응 기본방향	1
II. 대학 일상 관리	2
1. 학내 환경 관리(공통)	2
2. 학내 시설별·상황별 관리	2
III. 상황 발생 시 관리	3
1. 유증상자 발생 시	3
2. 확진자 발생 시	3
참고 생활방역 세부수칙 주요사항(발체)	4

I 대응 기본방향

-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(‘상각’ → ‘경계’) 및 ‘온전한 일상 회복’ 전환(6.1.~) 기조에 맞춰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
- ※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대학 방역지침 완화

< 위기단계 하향 조정(상각→경계) 주요 내용(23.6.1.~) >

- 격리 권고 전환(7일 의무 → 5일 권고)
- 의뢰기관(의원), 약국 등 실내 마스크 전면 권고로 전환
- * 병원급 이상 의뢰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
-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, 입소자(입소시)는 유지

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방역조치(중기 완화)		
분야	현행	변경 (상각→경계)
격리	확진자 7일 격리	5일 권고 전환
마스크	필수 유지 (입소형 감염취약시설, 의뢰기관·약국)	의원, 약국 권고 전환 (병원급 이상 의뢰기관,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입소간 유지)
감염취약 시설 보호	입소자(입소시, 종사자) 100% 선제검사(PCR) 전체 대면면접 시 취식 허용 (방역수칙 준수)	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(주요한 다수인 진료 등 방문시 PCR 또는 RAT) 전체 대면면접 시 취식 허용 (방역수칙 준수)
전역	입국 후 3일차 PCR 권고	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(당도개원 유지)

II 대학 일상 관리

1 학내 환경 관리(공통)

- (소독·환기) 빈번 접촉 장소, 다수 밀집 장소 등에 대한 소독·환기는 감염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, 감염 위험요인 관리
- *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’, ‘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수칙’ 참고
- ※ ‘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 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
- (방역물품) 감염병 위기 단계·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내 시설에 최소 기준 수량* 이상의 방역물품을 비치

* ‘감염병 예방·위기대응 매뉴얼’ 제시 수준 비축·유지

2 학내 시설별 · 상황별 관리

- (강의실) 학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강의실 탈집도 기준을 해제하거나 대학별 별도 기준 설정 가능
- (기숙사) 개인 방역 준수 및 환기소독 등 철저,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집단 간식 섭취 자제
 - 유증상자가 ‘음성’ 확인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급적 귀가 조치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 1인실 사용 권고
- (교내 식당) 시설·기구 청소·소독, 식사시간 주기적 환기, 식사 전 손소독 등 식사지도,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* 및 급식 위생관리 철저
 - * 종사자 격리 대비 대체인력 운영 및 관리

- (학교 행사)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
-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*·권고 상황 외에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,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
* (실내마스크 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
< 참고 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(중대본) >

-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 -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-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 -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 -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 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 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- ※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※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9판)」, 「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(제7-2판)」, 참고

III 상황 발생 시 관리

1 유증상자 발생 시

- (대학) 동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(KF80 이상) 마스크 착용 후, 인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
 - ※ 학교에서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증상자에게 배포 및 기정 등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(권장)
- (학내 구성원) 유증상자는 동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의료기관 방문 또는 자기검사*
 - * 자기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(RAT·PCR) 또는 보건소(PCR)에서 확진 검사 실시

2 확진자 발생 시

- (대학)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
 - ※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
- 확진(본인 또는 동거인)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(유증상에 따른 검사·진료자 등 포함)
 - * (예시) 학생 : 출석 인정 / 교직원 :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
- ※ 확진 또는 검사·진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보건소의 음성 확인 문자,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, 처방전 등)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
- (확진자)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, 학생·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동교 중지 권고
 - ※ (근거) 방역당국의 「코로나19 대응 지침」
 - ※ (방역당국 지침)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 마스크(또는 이와 동급) 상시 착용 권고

참고

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(제7-2판) 주요사항 (발췌)

3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

< 개인방역 보조수칙 : 코로나19 확진자 >

내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

-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.
-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하고,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.
-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,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.
-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.
-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.

㉔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.

- 코로나19 확진자는 독방을 사용하고, 방에서 나올 때는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착용합니다.
-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 합니다.
- 방문고리,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.
- 밥그릇 등 식기, 수건, 침대, 컴퓨터는 가족과 따로 씁니다.
-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합니다.

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.

- 외출하는 동안에는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를 씁니다.
-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,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.
-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.
-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합니다.

내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.

-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.
-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.
- 심호흡,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.
-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.
-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정신건강복지센터 ☎ 1577-0199)

내 아플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.

-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확진자가 발열, 기침,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세요.
-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낀다면 의료기관(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)에서 진료를 받으세요.

내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.

-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, 재활용품,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,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배출합니다.

* 확진자의 폐기를 처리 방법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」 최신판을 참고하세요.
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제도기간 1개월(20.10.13.~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
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

- (착용 의무) 감염취약시설*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
* 감염취약시설 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- (관리 의무) 의무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

★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

<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>

- ① 코로나19 확진자가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 했던 경우
-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-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- 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-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성·합창·대화 등 비밀·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※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

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-AD), 수출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
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※ 망사형 또는 벨트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리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○ 과테레로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
예외 대상자	마스크 착용 범위(침취지 상 과테레로 부과 예외) 과테레로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되지 않음	• 24개월 미만인 영유아 • 노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행위는 과테레로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예외 상황	•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·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* 다인 침실·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·입소자, 상주간병인, 상주보호자 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·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수어통역을 할 때 • 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) 할 때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응급 구조활동 등)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	